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02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김태년 의원안)	3

I. 개요

1.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0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태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1. 28.
- (3) 회 부 일 : 2024. 11.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

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II. 검토의견

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 (김태년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신설(제106조의11) ○ <u>관광사업자가 면세점사업자 또는 다른 관광사업자에게 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광사업자와 면세점사업자는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u> ○ <u>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송객용역 가액은 관광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함.</u> ○ <u>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u> ○ <u>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함.</u> ○ <u>관할세무서장은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u> ○ <u>송객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u> ○ <u>송객용역의 매출액이 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 환급을 보류할 수 있음.</u> ○ <u>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자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함.</u> ○ <u>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송객용역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u>

* 김태년의원안 2024. 11. 28. 발의(의안번호 6029)

□ 개정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면세점사업자가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송객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함)을 공급받은 경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이하 “송객수수료”라 함)의 부가가치세를 관리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점사업자 또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가 지급한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거래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전용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통해 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면세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 받은 후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1조¹⁾는 거래징수를 규정함으로써 공급자(사업자)가 매입자(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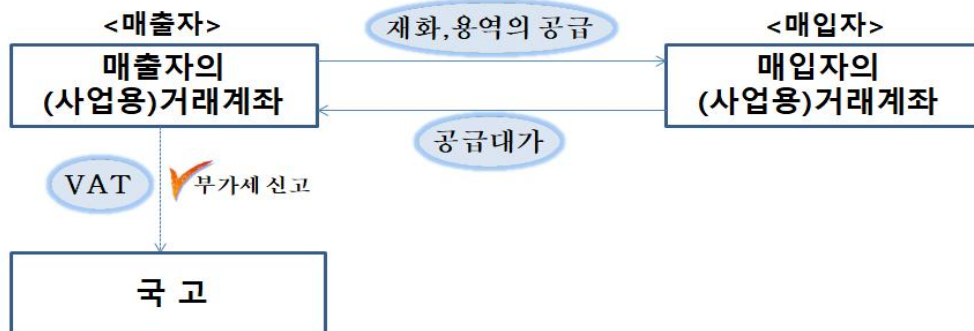
그러나 일부 공급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 납부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등 거래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을 탈루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1) 「부가가치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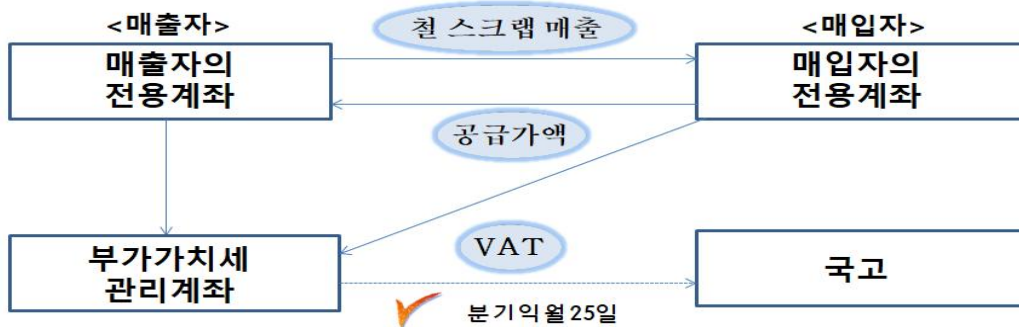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 거래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거래 흐름 비교]

□ 일반적 거래 흐름(거래징수)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거래 흐름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는 2008년 금지금²⁾ 거래에 대하여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정상적인 납세를 위해 특례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왔음.

2009년 고금, 2014년 구리 스크랩³⁾, 2015년 금 스크랩에 이어 2016년 철 스크랩 거래가 대상에 추가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구리, 철 외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을 포함한 비철금속류에 대하

2)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

3) 스크랩은 금속제품을 만들 때 생기는 금속 부스러기나 제품의 폐물, 쇠 부스러기 등이 대표적이며, 강철의 제련과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말함.

여도 매입자납부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음.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현황]

대상	금지금	고금	구리 스크랩	금 스크랩	철 스크랩	비철 금속류	면세점 송객용역
시행일	2008년 7월 1일	2009년 7월 1일	2014년 1월 1일	2015년 7월 1일	2016년 10월 1일	2024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통상 국내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와 여행가이드 등에게 여행객 유치에 대한 대가로서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만큼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는데, 송객수수료의 규모가 2018년 1조 3,18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면세점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 감소 등의 이유로 2021년 3조 8,750억원, 2022년 7조 1,530억원까지 증가하였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연도별 송객수수료 및 면세점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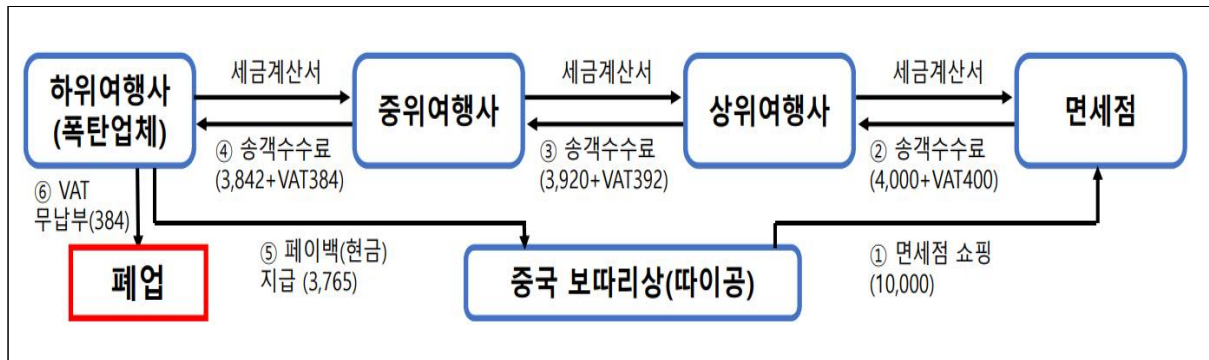
(단위: 십억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송객수수료 (A)	297	549	563	967	1,148	1,318	1,300	863	3,875	7,153	595
외국인면세점 매출액(B)	4,267	5,730	6,119	8,815	10,652	15,000	20,813	14,585	17,005	16,390	11,073
비중 (100*A/B)	7.0	9.6	9.2	10.9	10.8	8.8	6.2	5.9	22.8	43.6	5.4

자료: 기획재정부(관세청 및 한국면세점협회 작성)

그런데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일부 여행사가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고의로 폐업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면세점 및 여행사 간 거래구조 현황]



주: 송객수수료 규모는 면세점 매출의 40%, 여행사 마진은 매출의 2%로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9에서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등 재화에 대해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하여 도입하려는 것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자인 면세점 등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방지하여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투명한 거래와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면세점사업과 관광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2024년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세법개정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므로,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⁵⁾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147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5. 7. 1.]